

平成 25 年度改訂
韓 国 語 版

交通事故・事故にあわれた方へ
[교통사건 사고를 당한 분에게]

福 井 県 警 察
[후쿠이현경찰]

は じ め に

このパンフレットは、交通事故の被害者やその家族の方に

- 警察の支援制度とはどのようなものか。
- 警察が被害者やその家族の方にお願ひすることは何か。
- 事故の加害者はどのような手続で処罰されるのか。
- 自動車の保険制度はどのようなものか。

などをお知らせし、皆さんの手助けとさせていただくものです。

少しでも皆さんのお役に立てば幸いです。

～ 目 次 ～

1	警察等からの支援などはあるのですか・・・・・・・・・・・・・・・・	1
	～ 支援と連絡の制度 ～	
2	加害者はどのように処罰されるのですか・・・・・・・・・・・・・・・・	5
	～ 捜査開始から処分決定までの流れ ～	
3	自動車保険など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17
	～ 補償と保険の制度 ～	
4	援助や救済制度はあるのですか・・・・・・・・・・・・・・・・	23
	～ 援助や救済の内容 ～	
5	警察以外の相談窓口はあるのですか・・・・・・・・・・・・・・・・	27
	～ 関係機関からのアドバイスとカウンセリングの機関 ～	



머 리 말

이 팸플릿은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분들에게

- 경찰의 지원제도란 어떤 것인지
- 경찰이 피해자 및 그 가족 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 사고 가해자는 어떤 수속으로 처벌 받게 되는지
- 자동차보험 제도는 어떤 것인지

등을 알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목 차 ~

- 1 경찰 등으로부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 지원과 연락의 제도 ~
- 2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 받게 됩니까? 6
~ 수사 시작으로부터 처분 결정까지의 흐름 ~
- 3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18
~ 보상과 보험의 제도 ~
- 4 원조 및 구제 제도는 있습니까? 24
~ 원조 및 구제의 내용 ~
- 5 경찰 이외의 상담 창구는 있습니까? 28
~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조언과 카운슬링 기관 ~



警察等からの支援などはあるのですか

警察では、交通事故の被害者やその家族の方（このパンフレットでは、以下「被害者等」と記載します。）を支援するために、警察職員の付添い、情報の提供、相談窓口の設置などを行っています。

指定被害者支援要員制度

交通事故が発生して間がない、精神的に動揺されている被害者等を支援するために、捜査員とは別に指定された警察職員が、被害者等への付添い、各種相談の受理などの支援活動を行っています。

被害者連絡制度

被害者等は、交通事故の捜査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加害者は捕まったのか、加害者の刑事処分はどうなったのかなどについて、大きな関心を持っ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

警察では、このような関心に応えるために、重大な交通事故事件等について、交通事故を担当した捜査員等が被害者等に対し、次のような情報を提供する制度を運用しています。

交通事故の相手方に関する事

- 加害者の住所、氏名・年齢等
- 交通事故の発生日時、場所
- 捜査状況

交通事故の相手方の刑事処分に関する事

- 加害者の検挙状況
- 加害者の処分状況
- 送致先検察庁、起訴・不起訴等の処分結果、起訴された裁判所

その他

被害者等の中には、交通事故のことを思い出したくないので何も連絡しないでほしいという方もおられると思います。

そのような方は、担当捜査員等にその旨、お知らせください。



경찰로부터의 지원 등은 있습니까?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분들(이 팸플릿에서는 이하 ‘피해자 등’으로 기재)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직원의 동반, 정보 제공, 상담 창구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피해자 지원요원 제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정신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사원과 는 별도로 지정된 경찰 직원이 피해자 등에 대한 동반, 각종 상담의 수리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 제도

피해자 등은 교통사고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해자는 잡혔는지, 가해자의 형사 처분은 어떻게 됐는지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한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담당 한 수사원 등이 피해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가해자의 주소, 이름・연령 등
- 교통사고의 발생 일시, 장소
- 수사 상황

교통사고의 상대방 형사처분에 관한 정보

- 가해자의 검거 상황
- 가해자의 처분 상황
- 송치된 검찰청, 기소·불기소 등의 처분 결과, 기소된 재판소

기타

피해자 등 중에는 교통사고를 상기하고 싶지 않아 아무 연락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담당 수사원 등에게 그 뜻을 알려 주십시오.



行政処分に関する情報提供

交通事故を起こした加害者には、刑事処分とは別に、運転免許の取消しや停止処分の行政処分が公安委員会により行われます。行政処分（取消し処分と90日以上停止処分）がされる前には、公開による「意見聴取」が、処分を受ける加害者に対して行われます。ただし、「意見の聴取」には、代理人が出席することもありますし、加害者も代理人も出席しないときは、「意見の聴取」が行われずに処分が行われることがあります。

警察では、行政処分の結果や、「意見の聴取」について、お問い合わせいただければ、次の情報提供を行っています。

行政処分の内容

加害者に対して行った行政処分の内容（免許の取消し・効力の停止別及び停止の場合にはその日数）をお知らせします。

意見の聴取の期日等

「意見の聴取」を行う期日と場所をお知らせします。

警察の相談窓口

警察では、専門的な立場から被害者等の相談に乗るなどの支援活動も行っています。その窓口を紹介しますので、参考にしてください。

① 警察相談電話(各種の警察相談の受付)

〇・・・電話 0776-26-9110 #9110

② 交通事故に関する相談窓口

〇・・・福井県警察本部(電話0776-22-2880)

〇・・・最寄りの警察署交通課

〇・・・各都道府県警察の相談窓口を知りたい方は、
警察庁犯罪被害者支援室ホームページ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

をご参照ください。

相談窓口



③ カウンセリングに関する相談窓口

交通事故等により大きな精神的被害を受けた被害者等に対し、精神的被害を軽減するため、カウンセリングに関する専門的知識や技術を有する職員の配置、精神科医や民間のカウンセラーとの連携などにより、被害者等のための相談・カウンセリングを実施しています。

〇福井県警察本部警務課（専門窓口電話 0776-22-2880 内線 2690～2692）

행정 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분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이公安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행정 처분(취소 처분과 90 일 이상의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개적인 ‘의견 청취’가 처분을 받을 가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의견 청취’에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해자도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견 청취’ 없이 처분이 행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행정 처분의 결과 및 ‘의견 청취’에 대해 문의하시면 다음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내용

가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 처분의 내용(면허 취소·효력의 정지 여부, 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 청취의 기일 등

‘의견 청취’를 실시할 기일과 장소를 알려 드립니다.

경찰의 상담창구

경찰에서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피해자 등의 상담에 응하는 등 지원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창구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십시오.

① 경찰종합상담전화(각종 경찰 상담 접수)

○···전화 0776-26-9110 #9110

② 교통사고에 관한 상담창구

○···후쿠이현 경찰본부(전화 0776-22-2880)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

○···각 도도부현 경찰의 상담창구를 알고 싶은 분은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실 홈페이지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

를 참조하십시오.

相談窓口



③ 카운슬링에 관한 상담창구

교통사고 등에 의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카운슬링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직원의 배치, 정신과 의사 및 민간 카운슬러와의 연계 등으로 피해자 등을 위한 상담·카운슬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쿠이현경찰본부 경무과 (전문창구 전화 0776-22-2880 내선 2690~2692)

警察以外の機関による支援や連絡制度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警察以外の機関が行っている支援制度には、次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

検察庁における被害者支援員制度

被害者等の負担や不安をできるだけ和らげるため、被害者等の支援に携わる「被害者支援員」が全国の検察庁に配置されています。

被害者支援員は、被害者等からの様々な相談への対応、法廷への案内・付添い、事件記録の閲覧、証拠品の返還などの各種手続の手助けをするほか、被害者等の状況に応じて精神面、生活面、経済面等の支援を行っている関係機関や団体等を紹介するなどの支援活動を行っています。

法務省の各機関における被害者等通知制度等

検察庁、地方更生保護委員会又は保護観察所から、被害者等に対し、その希望に応じ、事件の処分結果、刑事裁判の結果や有罪裁判確定後の加害者の処遇状況等について通知する制度があります。

これらの通知の申出先は、事件を取り扱った検察庁です。

また、少年院、地方更生保護委員会又は保護観察所から、被害者等に対し、その希望に応じ、保護処分を受けた加害者に係る通知（少年審判後の通知）を行っています。

これらの通知の申出先は、加害者が少年院送致処分を受けた場合はお近くの少年鑑別所、保護観察処分を受けた場合はお住まいの都道府県にある保護観察所です。

加害者はどのように処罰されるのですか

交通事故が発生した場合は、次のような流れで加害者を処罰します。

捜査

捜査とは、証拠を集めることにより犯人を特定し、事実関係を明らかにして事件を解決し、犯人を処罰するために行う活動をいいます。

警察では、交通事故が発生した場合、次のような捜査を行います。

事情聴取

交通事故にあわれた状況や交通事故の届出をした状況などについて、担当の警察官が詳しくお聞きします。

供述調書を作成することもあります。

被害者等にとっては、思い出したくないこと、言いたくないことなどがあるかと思いますが、事情聴取は交通事故の原因究明と加害者の特定に欠く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詳しいことが分かるほど、早期の事件解決につながりますので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경찰 이외 기관에 의한 지원 및 연락 제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경찰 이외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청의 피해자 지원원 제도

피해자 등의 부담 및 불안을 가능한 한 완화시키기 위해 피해자 등의 지원에 종사하는 ‘피해자 지원원’이 전국의 검찰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원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상담에 대한 대응, 법정에 대한 안내·동반, 사건 기록의 열람, 증거물의 반환 등 각종 수속을 도와주며, 그밖에 피해자 등의 상황에 따라 정신면, 생활면, 경제면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을 소개하는 지원 활동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성 각 기관의 피해자 등 통지 제도 등

검찰청, 지방更生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희망에 따라 사건의 처분 결과, 형사재판의 결과 및 유죄 재판 확정 후의 가해자 처우 상황 등에 대하여 통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 통지의 신청 장소는 사건을 취급한 검찰청입니다.

또, 소년원, 지방更生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희망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관련된 통지(소년심판 후의 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통지의 신청 장소는 가해자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가까운 소년감별소,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거주지 도도부현에 있는 보호관찰소입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 받습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수사

수사관, 증거를 모음으로써 범인을 특정하여, 사실 관계를 밝혀서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수사를 합니다.

사정 청취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이나 교통사고를 신고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담당 경찰관이 자세하게 묻습니다.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등 입장에서는 상기하고 싶지 않은 것,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사정 청취는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과 가해자의 특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을 알면 알수록 조기의 사건 해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実況見分

実況見分とは、警察官が

- 交通事故の現場
- 被害者が着ていた服や事故車両

などの状況について詳しく調べて、交通事故の状況や原因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す。

被害者等には、実況見分に立ち会って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す。また、交通事故の発生当時に被害者の方が着ていた服などは、事件解決につながる証拠品として提出していただくこともあります。

これは、公判において重要な証拠となります。

事件送致

警察では、捜査に基づいて加害者を犯人であると認めた場合（この場合の加害者を「被疑者」と呼びます。）は、次のような方法により、証拠とともに被疑者を検察官に送ります。これを事件送致といいます。

被疑者を逮捕した場合

- 捜査のため必要がある場合は、被疑者を逮捕し、身柄を拘束した時から48時間以内に関係書類と証拠品などとともに、検察官に送致します。
- 検察官は、必要があると認めた場合は、送致を受けた時から24時間以内に、裁判官に対して被疑者の勾留を請求します。
- 継続して被疑者の身柄を拘束する必要がある場合は、最長20日間被疑者を勾留することもあります。

被疑者を逮捕しない場合

- 被疑者を逮捕しないで、任意で捜査を行った場合は、取調べなどの捜査を行ったのち、関係書類と証拠品を検察官に送致します。



실황검사

실황검사란, 경찰관이

- 교통사고의 현장
-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나 사고차량

등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여 교통사고의 상황이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피해자 등도 실황검사에 입회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의 발생 당시에 피해자 분이 입고 있었던 옷 등은 사건 해결로 이어지는 증거물로서 제출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송치

경찰은 수사에 근거하여 가해자를 범인으로 인정했을 경우(이 경우의 가해자를 ‘피의자’라고 부릅니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와 함께 피의자를 검찰관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사건송치라고 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신병을 구속했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과 함께 검찰관에게 송치합니다.
- 검찰관은 필요성을 인정했을 경우는 송치되었을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재판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구류를 청구합니다.
- 계속해서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류하는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임의로 수사를 했을 경우는, 조사 등의 수사를 한 뒤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송치합니다.



起 訴

検察官は、送致された証拠などに基づいて、被疑者を裁判にかけるかどうかの決定を行います。

- 裁判にかける場合を「起訴」
- 裁判にかけない場合を「不起訴」

と言います。

また、起訴には

- 公開の裁判を請求する「公開請求」
- 書面審理により罰金や料金を命じる裁判を請求する「略式請求」等

とがあります(被疑者は起訴されると「被告人」と呼ばれます。)

※ 起訴、不起訴の判断に必要がある場合等には、検察官が被害者等から事情を聞きますので、ご理解ください。

※ 不起訴となった場合は、地方裁判所と主な地方裁判所支部にある検察審査会に審査の申立てができます。

詳しくは、最寄りの検察審査会事務局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公判等

公判では、裁判官が証拠による審理を行い判決を下します。

被害者等には、刑事裁判において、証人等として証言等して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す。裁判では、被害者等を保護するために、次のような制度が定められています。

- 裁判所が認める適当な人に付き添ってもらうこと。
- 被害者等が、被告人や傍聴人から見えないように、間に遮へい物を設置してもらうこと。
- 別室から、ビデオモニターを通じて証言すること。

この他、次のような制度があります。

- 第1回の公判期日の後、原則として、裁判所にある刑事事件の事件記録の閲覧、コピーができます。
- 被害に関する心情や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ます。
- 被害者等の申出があれば、公判を優先して傍聴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配慮がされます。
- 被告人との間で示談した場合に、別に民事訴訟を起こさなくてもいいように、その示談内容を刑事裁判の調書に記載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



기소

검찰관은 송치된 증거 등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를 ‘기소’
-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를 ‘불기소’

라고 말합니다.

또, 기소에는

- 공개 재판을 청구하는 ‘공판청구’
-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를 명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약식청구’ 등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기소되면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

※ 기소, 불기소의 판단시 필요할 경우 검찰관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정을 들을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 불기소가 되었을 경우는 지방재판소와 주요 지방재판소 지부에 있는 검찰심사회에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검찰심사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십시오.



공판등

공판에서는 재판관이 증거에 의한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자 등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 등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재판소가 인정하는 적당한 사람이 동반할 것.
-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나 방청인에게서 보이지 않도록 사이에 차폐물을 설치할 것.
- 별실에서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 증언할 것.

기타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제1회 공판기일 후, 원칙적으로 재판소에 있는 형사사건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에 관한 심정 및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등의 제안이 있으면, 공판을 우선하여 방청할 수 있게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합의하여 해결했을 경우에, 달리 민사소송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도록 그 해결 내용을 형사 재판의 조서에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検察庁で冒頭陳述の要旨を記載した書面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 被害者参加制度

危険運転致死傷罪、自動車運転過失致死傷罪等の被害者等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被害者参加人という訴訟手続上の地位を得た上で、刑事裁判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す。

具体的には、公判期日に出席し、一定の要件の下で証人や被告人に対し質問をしたり、事実又は法律の適用についての意見を述べ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被害者国選弁護制度

被害者参加人となった被害者等は、公判期日への出席や被告人質問等の行為を弁護士に委託することもできますが、その資力（現金、預金等の合計額）から療養費等の額（犯罪行為を原因として請求の日から3か月以内に支出することとなると認められる治療費その他の費用の合計額）を控除した額が、基準額（150万円）に満たない場合には、裁判所に対して、弁護士の援助を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弁護士（被害者参加弁護士）の選定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弁護士の報酬及び費用は、国が負担することになります。

○ 損害賠償命令制度

危険運転致死傷等の故意の犯罪行為により人を死傷させた罪等の被害者等は、刑事事件が地方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場合に、その刑事事件を担当している裁判所に対し、刑事事件で起訴されている犯罪事実を原因とした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を被告人に命ずるよう求める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この手続は、被告人に対し有罪の言渡しがあった場合、直ちに損害賠償命令事件の審理が開始され、原則として4回以内の期日で簡易迅速に行われ、刑事事件を担当した裁判所が刑事記録を職権で取り調べるなど、被害者等による被害事実の立証が容易になっています。

なお、4回以内の期日では終わらない場合や損害賠償命令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て異議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等は、通常の民事訴訟手続に移行します。

詳しくは、担当の検察官、事件を担当する検察庁や裁判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검찰청에서 모든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참가제도

위험운전 치사상죄,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상죄 등의 피해자 등은,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참가인이라는 소송수속상의 지위를 얻은 후에 형사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증인 및 피고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사실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제도

피해자참가인이 된 피해자 등은, 공판 기일의 참석이나 피고인 질문 등의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자력(현금, 예금 등의 합계액)으로부터 요양비 등의 금액(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출하게 될 것으로 인정 받는 치료비 기타 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액(150만엔) 미만일 경우에는, 재판소에 대하여 변호사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명령 제도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킨 죄 등의 피해자 등은, 형사사건이 지방재판소에 관여되어 있을 경우에 그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소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있는 범죄사실을 원인으로 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속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언도가 있었을 경우 즉시 손해배상 명령 사건의 심리가 개시되어 원칙적으로 4회 이내의 기일로 간단·신속하게 이루어지며, 형사사건을 담당한 재판소가 형사기록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 피해자 등에 의한 피해사실의 입증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4회 이내의 기일로는 끝나지 않을 경우나 손해배상 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등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수속으로 이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검찰관,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및 재판소에 문의하십시오.



また、少年による事件の被害者等には、次のような制度があります。

- 被害者等は、審判開始の決定があった後、原則として、裁判所にある少年事件の事件記録（少年の要保護性に関して行われる調査についての記録である、いわゆる社会記録は除く。）の閲覧、コピーができます。
- 裁判官や家庭裁判所調査官に対して、被害に関する心情や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ます。
- 殺人、傷害等の故意の犯罪行為により人を死傷させた罪、自動車運転過失致死傷罪等（加害者の年齢が事件当時、12歳以上の場合に限られます。また、いずれも傷害の事案にあっては、これにより生命に重大な危険を生じさせた場合に限られます。）の被害者等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少年審判を傍聴することができます。
- 家庭裁判所から、審判期日における審判の状況について説明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 家庭裁判所から、少年審判の結果等の通知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詳しくは、事件を担当する家庭裁判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更生保護において利用できる主な制度

加害者の更生保護について、次のような意見を述べる制度があります。

- 加害者が刑事施設や少年院に収容された場合、申出をした被害者等は加害者の仮釈放や少年院からの仮退院を許す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に地方更生保護委員会が行う審理において、仮釈放・仮退院に関する意見や被害に関する心情を述べることができます。聴取した意見等は、地方更生保護委員会において、仮釈放・仮退院の判断に当たって考慮されるほか、仮釈放・仮退院を許す場合の特別遵守事項の設定等に当たって考慮されます。
- 心情等伝達制度
加害者が保護観察となった場合、被害者等の方の申出に応じ、保護観察所が、被害に関する心情、被害を受けられた方の置かれている状況、保護観察中の加害者の生活や行動に関する意見を聴取し、これを保護観察中の加害者に伝えます。保護観察中の加害者に対しては、被害の実情等を直視させ、反省や悔悟の情を深めさせるよう指導監督を行います。

詳しくは、最寄りの保護観察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또, 소년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 등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피해자 등은, 심판 시작의 결정이 난 후, 원칙적으로 재판소에 있는 소년 사건의 사건기록(소년의 요보호성에 관해 행해지는 조사에 대한 기록인, 소위 사회기록은 제외함)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관 및 가정재판소 조사판에게 피해에 관한 심정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살인, 상해 등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킨 죄, 자동차운전 과실치사 상죄 등(가해자의 연령이 사건 당시 12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 상해 사안에 관해서는 모두 이로 인해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생기게 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의 피해자 등은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소년심판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재판소로부터 심판 기일의 심판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가정재판소로부터 소년심판의 결과 등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재판소에 문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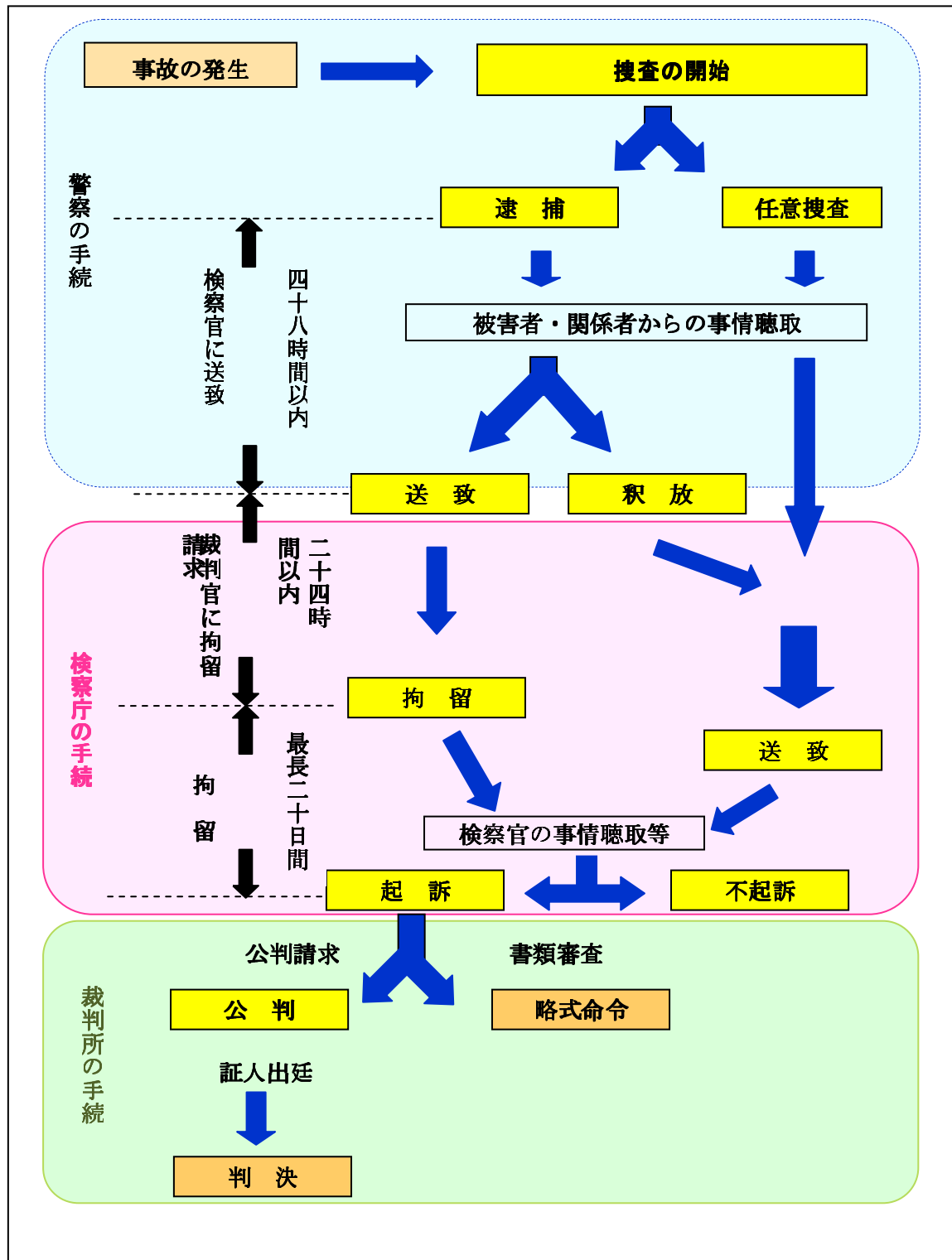
更生보호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제도

가해자의更生보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가해자가 형사시설 및 소년원에 수용되었을 경우, 신청한 피해자 등은 가해자의 가석방이나 소년원으로부터의 가퇴원을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방更生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심리에서 가석방·가퇴원에 관한 의견 및 피해에 관한 심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청취한 의견 등은, 지방更生보호위원회에서 가석방·가퇴원의 판단시에 고려되며 그밖에 가석방·가퇴원을 허락할 경우의 특별준수 사항의 설정 등에서 고려됩니다.
- 심정 등 전달 제도
가해자가 보호관찰로 되었을 경우, 피해자 등 쪽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피해에 관한 심정, 피해를 입은 분에 놓인 상황, 보호관찰 중인 가해자의 생활이나 행동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것을 보호관찰 중인 가해자에게 알립니다. 보호관찰 중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의 실정 등을 직시시켜, 반성과 회개의 마음을 깊게 갖도록 지도·감독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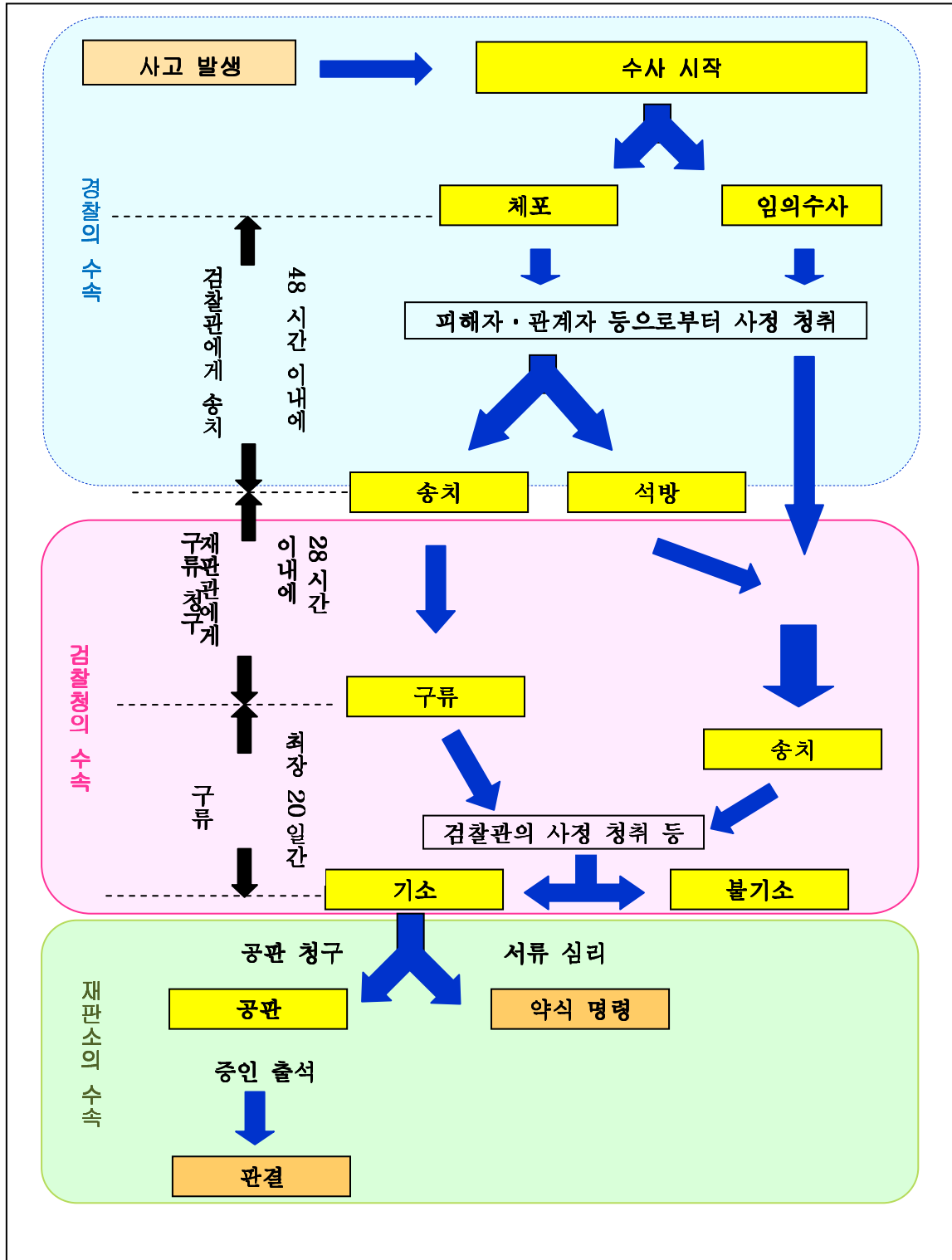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십시오.

刑事手続の流れ図



※ 犯人が少年(20歳未満)のときは、少年審判手続などによる場合があります、これらの手続とは違いがあります。

형사 수속의 흐름도



범인이 소년(20 세 미만)의 경우는 소년심판 수속 등에 의한 경우가 있어 이 수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自動車保険など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交通事故の被害者等への保障制度は、次のようになっています。

自賠責保険と任意保険

自動車保険には、強制保険と呼ばれている自賠責保険（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険、共済を含む。）と任意保険（共済を含む。）があ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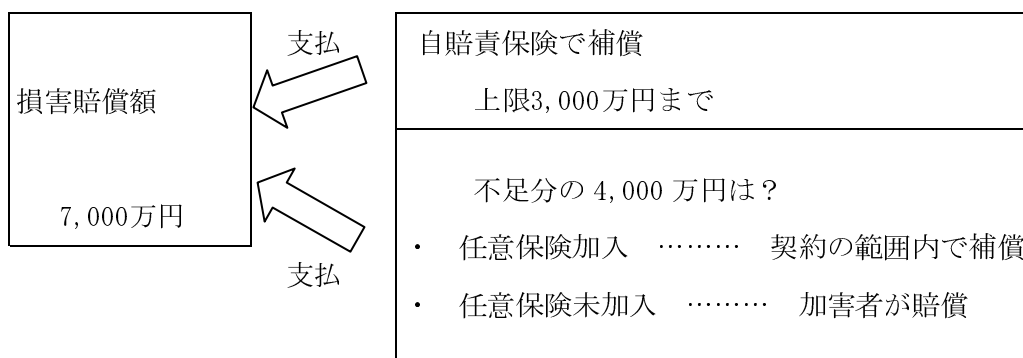
○ 自賠責保険は、交通事故による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目的で、車1台ごとに加入を義務付けられている保険

○ 任意保険は、自賠責保険では補いきれない損害賠償を補償する保険で、次のようになっています。

自賠責保険			任意保険						
加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		加入	任 意						
人身損害のみ		対象	人身損害と物損						
<table><tr><td>死 亡</td><td>3, 0 0 0 万円</td></tr><tr><td>傷 害</td><td>1 2 0 万円</td></tr><tr><td>後遺障害</td><td>75 万～4, 000 万円 (1～14の障害等級による)</td></tr></table>		死 亡	3, 0 0 0 万円	傷 害	1 2 0 万円	後遺障害	75 万～4, 000 万円 (1～14の障害等級による)	支払い 限度額	保険契約の限度額までの補償
死 亡	3, 0 0 0 万円								
傷 害	1 2 0 万円								
後遺障害	75 万～4, 000 万円 (1～14の障害等級による)								

人身損害の場合は、基本的に自賠責保険から補償され、損害賠償額が限度額を上回ったときは、上回っている分は任意保険により補償されることとなります。

例えば、死亡事故で損害賠償額が7,000万円となった場合、自賠責保険で上限3,000万円が補償(てん補)され、不足分の4,000万円は加害者側が加入の任意保険や被害者が加入の人身傷害保険等によりその全額又は一部が補償されます。これらによっても補償額が損害賠償額に満たない場合や、関係者がこれらの保険に未加入の場合は、加害者自身が賠償することとなります。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교통사고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배책보험과 임의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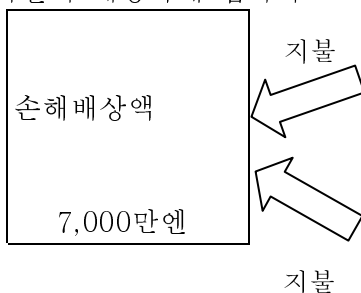
자동차보험에는, 강제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배책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를 포함)과 임의보험(공제를 포함)이 있으며,

- 자배책보험은,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도모할 목적으로 자동차 1 대마다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보험
- 임의보험은, 자배책보험에서는 모두 보완할 수 없는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배책보험			임의보험						
가입해야 함(의무)		가입	임의						
인신 손해만		대상	인신 손해와 대물 손해						
<table border="1"><tr><td>사망</td><td>3,000만엔</td></tr><tr><td>상해</td><td>120만엔</td></tr><tr><td>후유 상해</td><td>75만~4,000만엔 (1~14의 장애등급에 따름)</td></tr></table>		사망	3,000만엔	상해	120만엔	후유 상해	75만~4,000만엔 (1~14의 장애등급에 따름)	지불 한도액	보험계약의 한도액까지 보상
사망	3,000만엔								
상해	120만엔								
후유 상해	75만~4,000만엔 (1~14의 장애등급에 따름)								

인신손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배책보험으로 보상되며, 손해 배상액이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초과분은 임의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로 손해배상액이 7,000만엔으로 되었을 경우, 자배책보험으로 상한 3,000만엔이 보상(전보)되어, 부족분 4,000만엔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임의보험이나 피해자가 가입한 인신상해보험 등에 의해 전액 또는 일부가 보상됩니다. 이들에 의해서도 보상액이 손해 배상액을 채울 수 없을 경우나 관계자가 이들 보험에 미가입이었을 경우는 가해자 자신이 배상하게 됩니다.



자배책보험으로 보상 상한 3,000만엔까지
부족한 4,000만엔은? • 임의보험 가입 계약 범위 내에서 보상 • 임의보험 미가입 가해자가 보상

自賠責保険

1 自賠責保険の請求

加害者又は被害者が、損害保険会社（組合を含む。）に対して、交通事故証明書、診断書等の必要書類を提出して損害賠償額の支払いを請求します。

(1) 被害者請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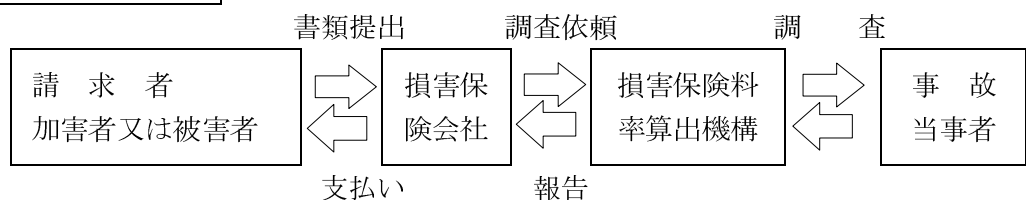
被害者等から直接、事故を起こした自動車について契約を締結している損害保険会社に対して損害賠償額の支払いを請求できます。

(2) 加害者請求

損害賠償金を支払った運転者又は自動車の所有者から、契約を締結している損害保険会社に対して保険金を請求できます。

なお、総損害額の確定前であっても、被害者は医療機関へ治療費等を支払った都度、加害者は被害者へ賠償した都度、限度額の範囲内で何度でも損害保険会社に対して保険金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

保険請求の流れ



2 仮渡金（かりわたしきん）制度

被害者等が交通事故によって生活に困ることのないよう、示談が成立する前において、当座の出費に充てるために、仮渡金を損害保険会社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請求の具体的な手続については、損害保険会社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3 請求できる期間

請求区分	いつから	いつまでに
傷 害	治療を終えた日	事故発生から2年以内
後遺障害	症状固定日	症状固定日から2年以内
死 亡	死亡日	死亡日から2年以内

※ 症状固定日とは、症状が安定し、医学上一般に認められた医療を行っても、その医療効果が期待できなくなったときを言い、医師により判断されます。



자배책보험

1 자배책보험의 청구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손해보험 회사(조합을 포함)에 대하여 교통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해서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청구합니다.

(1) 피해자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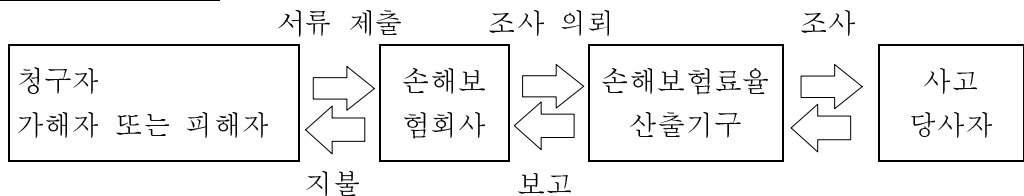
피해자 등이 직접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청구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운전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총 손해액의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비 등을 지불했을 때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했을 때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몇 번이라도 손해보험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의 흐름



2 가지불 제도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에 의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장의 출비에 충당하기 위해 가지불을 손해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3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청구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해	치료를 마친 날	사고 발생부터 2년 이내
후유장해	장해판정일	장해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	사망일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장해판정일이란, 증상이 안정세를 보이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를 해도 그 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의사에 의해 판단됩니다.



自賠責保険（共済）請求 提出書類一覧表

必要書類	加害者請求			被害者請求			仮渡金	
	死亡	後遺障害	傷害	死亡	後遺障害	傷害	死亡	傷害
保険金(共済)・損害賠償額・仮渡金支払請求書	◎	◎	◎	◎	◎	◎	◎	◎
交通事故証明書(人身事故)	◎	◎	◎	◎	◎	◎	◎	◎
事故発生状況報告書	◎	◎	◎	◎	◎	◎	◎	◎
医師の診断書または死体検案書(死亡診断書)	◎	◎	◎	◎	◎	◎	◎	◎
診療報酬明細書	◎	○	◎	◎	○	◎		
通院交通費明細書	◎		◎	◎		◎		
付添看護自認書または看護料領収書	○		○	○		○		
休業損害証明書または確定申告書(控え)など	○	○	○	○	○	○		
加害者の支払を証する領収書	◎	◎	◎					
示談書（示談成立の場合）	○	○	○					
請求者の印鑑証明	◎	◎	◎	◎	◎	◎	◎	◎
委任状及び委任者の印鑑証明(第三者に委任する場合)	○	○	○	○	○	○	○	○
戸籍謄本	◎			◎			◎	
後遺障害診断書		◎			◎			
レントゲン写真等	○	○	○	○	○	○		

◎印は必ず提出、○印は事故の内容によって提出する書類です。
その他の書類も必要に応じて提出し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任意保険(共済)

保険金請求の具体的な手続については、損害保険会社によって異なりますから、それぞれ加入している損害保険会社にお問い合わせ下さい。

被害にあわれた方



保険会社

事故後速やかに連絡



자배책보험(공제) 청구 제출서류 일람표

필요 서류	가해자 청구			피해자 청구			가지불	
	사망	후유 장해	상해	사망	후유 장해	상해	사망	상해
보험금(공제)·손해배상액·가지불 청구서	◎	◎	◎	◎	◎	◎	◎	◎
교통사고 증명서(인신사고)	◎	◎	◎	◎	◎	◎	◎	◎
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	◎	◎	◎	◎	◎	◎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	◎	◎	◎	◎	◎	◎
진료 보수 명세서	◎	○	◎	◎	○	◎		
통원 교통비 명세서	◎		◎	◎		◎		
간호 자인서 또는 간호료 영수증	○		○	○		○		
휴업 손해 증명서 또는 확정신고서(사본) 등	○	○	○	○	○	○		
가해자의 지불을 증명하는 영수증	◎	◎	◎					
합의서(합의 성립의 경우)	○	○	○					
청구자의 인감증명	◎	◎	◎	◎	◎	◎	◎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제3자에 위임하는 경우)	○	○	○	○	○	○	○	○
호적등본	◎			◎			◎	
후유장해 진단서		◎			◎			
엑스레이 사진 등	○	○	○	○	○	○		

◎표는 반드시 제출, ○표는 사고 내용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기타 서류도 필요에 따라 제출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보험(공제)

보험금 청구의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각자가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피해를 입은 분



보험회사

사고 후 신속히 연락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

次のような人身事故については、自賠責保険から救済が受けられません。

- ひき逃げされ、相手が判明しない。
- 事故を起こした相手が自賠責保険に加入していない。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とは、このような場合などに、政府が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に基づいて被害者等の救済を図るため、損害をてん補する制度です。

請求方法や必要な書類などの詳しいことは、損害保険会社などにお尋ねください。

その他の賠償請求

自動車による人身事故の損害賠償責任については、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第3条に定めがあり、被害者等は、加害者本人のほかに、自動車の所有者に対して財産的損害、精神的損害の賠償請求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援助や救済制度はあるのですか

交通事故被害者等に対する援助・救済制度には、次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

1 経済的支援や各種支援・福祉制度

(1) 官公庁が行うもの

名 称	内 容
被害者等の負担の軽減	犯罪により傷害等を負った場合に、次の医療費用等について経費を支給し、被害者等の費用負担を軽減しています。 ・ ご家族を亡くされた方～検案書料・遺体搬送費・遺体修復費 ・ 傷害等を負われた場合～初診料・診断書料 窓口：事件を担当する警察署又は警察本部
福祉制度	交通事故により父親を亡くしたため母子家庭となった場合に、児童扶養手当や母子福祉資金の貸付制度があります。 また、収入がなくなったり、少なくなったりしたため生活に困っている人に対しては、その程度に応じて、生活扶助、教育扶助、住宅扶助、医療扶助等の必要な保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生活保護制度が準備されています。 窓口：住所地の自治体、福祉事務所
公営住宅への優先入居	交通事故により収入が減少し生計維持が困難となった場合、現在居住している住宅又はその付近において交通事故が起きたために当該住宅に居住し続けることが困難となった場合などに、公営住宅への優先入居ができる制度です。 窓口：都道府県又は市町村の公営住宅管理担当

※ 詳しいことは関係する機関等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다음과 같은 인신사고에 대해서는 자배책보험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뺑소니를 당해 상대가 밝혀지지 않는다.
- 사고를 일으킨 상대가 자배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란, 이러한 경우 등에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피해자 등의 구제를 하기 위해 손해를 전보(填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것은 손해보험 회사 등에 문의하십시오.

기타 배상 청구

자동차에 의한 인신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에 정해져 있으며, 피해자 등은 가해자 본인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조나 구제 제도는 있습니까?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원조·구제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및 각종 지원·복지 제도

(1) 관공청이 실시하는 것

명 칭	내 용
피해자 등의 부담 경감	범죄에 의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에, 다음 의료비용 등에 대해 경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등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 검안서료·사체반송비용·사체수복비용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초진료·진단서료 창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또는 경찰 본부
복지 제도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모자가정이 되었을 경우에, 아동 부양 수당 및 모자복지자금의 대부제도가 있습니다. 또, 수입이 없어지거나 적어져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등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구: 주소지의 자치단체, 복지사무소
공영주택으로 의 우선적 입주	교통사고로 수입이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경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그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 등에 공영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창구: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공영주택 관리 담당

※ 자세한 것은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하십시오.

日本語

(2) 各種援助・救済機関が行うもの

名 称	内 容
独立行政法人自動車 事故対策機構 Tel03-5276-4451(東京本 部) 福井支所 福井市大手3丁目2-1 Tel0776-22-6006 交通事故被害者ホット ライン 0570-000738 ※9:00～17:00 土・日・祝日、年末年 始を除く	中学卒業までの交通遺児や自動車事故による重度後遺障害者 の子弟への生活資金の貸付等、下記のような被害者援護事業を行 っています。 ① 自動車事故により常時又は随時の介護が必要な重度後遺 障害が残った方への介護料給付 ② 自動車事故により重度後遺障害が残った方が病院や福祉 施設に短期で入院・入所する費用の助成 ③ 自動車事故による遷延性意識障害者の治療及び養護を行 う療護施設の設置・運営 ④ 交通遺児又は重度後遺障害者の子弟への生活資金の貸付 ⑤ 介護に係る相談、交通遺児の生活相談等の受付 ホームページ http://www.nasva.go.jp
(財)交通遺児育成基金 Tel03-5212-4511 フリーダイヤル 0120-16-3611	交通事故で父(母)親を亡くした13歳未満の交通遺児が、自動車 事故の損害賠償金等の中から拠出金を払い込んで「交通遺児育成 基金制度」に加入すると、これに国と民間協力団体が負担する援 助金を加えて運用し、交通遺児が満19歳に達するまで育成給付金 として年4回(3, 6, 9, 12月)一定額が支給されます。加入の 相談などは、基金事務局で受け付けています。 ホームページ http://www.kotsuiji.or.jp
(財)自動車事故被害 援護財団 Tel03-3237-0158	交通事故により配偶者を亡くした方や重度の後遺障害(自賠責 1～3級)が残った方などで、中学生以下の子弟を扶養している 被害者等を対象に一定の条件の下に、給付として「越年資金」「 小中学校入学支度金」「就職支度金」「緊急時見舞金」を支給す るとともに、無利子で20万円までを貸し付ける「緊急一時貸付」 を行っています。 ホームページ http://jikohigai.org
(財)高速道路交流推 進財団 Tel03-5804-1081	東日本高速道路株式会社、中日本高速道路株式会社、西日本 高速道路株式会社の管理する道路で交通事故により死亡された 方の遺児で、経済的に修学困難な高校生に対し、修学資金援助 を行っています。 ホームページ http://www.highway.or.jp/
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法テラス福井) Tel0503383-5475 犯罪被害者支援ダイヤ ル0570-079714(なくこ とないよ)	被害者等の支援に詳しい弁護士や犯罪被害者支援団体等に関 する情報の無料提供や、資力の乏しい方のために、無料法律相 談や裁判代理費用、書類作成費用の立替えなどを行います。 また、日本弁護士連合会からの委託を受けて、一定の犯罪の被 害者等に対して、人権救済の観点から弁護士費用等の援助を行 います。 ホームページ http://www.houterasu.or.jp

※ 詳しいことは関係する機関等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韓國語

(2) 각종 원조·구제 기관이 실시하는 것

명 칭	내 용
독립행정법인 자동차 사고 대책기구 전화 03-5276-4451 후쿠이출장소 후쿠이시오테3초메2-1 전화 0776-22-6006 교통사고 피해자 핫라인 0570-000738 ※9:00~17:00 토·일·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함	중학교 졸업까지의 교통유아나 자동차사고에 의한 중도후유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생활 자금의 대부 등, 아래와 같은 피해자 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자동차사고로 상시 또는 수시의 간호가 필요한 중도후유장애가 남은 분에 대한 간호료 급부 ② 자동차사고로 중도후유장애가 남은 분이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단기로 입원·입소하는 비용의 보조 ③ 자동차사고로 천연성 의식 장애인의 치료 및 간호를 하는 요양시설의 설치·운영 ④ 교통유아 또는 중도후유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생활 자금의 대부 ⑤ 요양과 관련된 상담, 교통유아의 생활 상담 등의 접수 홈페이지 http://www.nasva.go.jp
(재)교통유아 육성기금 전화 03-5212-4511 무료전화 0120-16-3611	교통사고로 아버지(어머니)를 여윈 13세 미만의 교통유아가,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금 중에서 거출금을 불입하여 ‘교통유아육성기금제도’에 가입하면, 이에 중앙정부와 민간협력단체가 부담하는 원조금을 합쳐서 운용하여, 교통유아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육성 급부금으로서 연 4회(3, 6, 9, 12월)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가입 상담 등은 기금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kotsuiji.or.jp
(재)자동차 사고 피해 원호 재단 전화 03-3237-0158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한 분이나 중도의 후유장애(자배책1~3급)가 남은 분들 중에서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 아래에, 급부로서 ‘연말자금’, ‘초중학교 입학 준비금’, ‘취직 준비금’, ‘긴급시 위문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무이자로 20만엔까지 대부하는 ‘긴급일시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jikohigai.org
(재)고속도로 교류 추진 재단 전화 03-5804-1081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분의 교통유아로서, 경제적으로 취학이 어려운 고교생에 대하여 수학 자금 원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highway.or.jp/
일본사법지원센터 법테라스후쿠이 전화 0503383-5475 범죄 피해자 지원 전화 0570-079714	피해자 등의 지원에 자세한 변호사 및 범죄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관한 정보의 무료제공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분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재판 대리 비용, 서류작성 비용의 대신지불 등을 실시합니다. 또,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인권구제의 관점에서 변호사 비용 등의 원조를 실시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houterasu.or.jp

※ 자세한 것은 관계 기관 등에 문의하십시오.

2 税法上の救済制度

交通事故が原因で負傷して医療費を支払ったり、身体に障害を負ったりした方、あるいは、配偶者と死別した方などには、所得税が減額される「所得控除」が認め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所得控除には、次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

名 称	内 容
医療費控除	支払った医療費（その医療費を補てんするために支払いを受けた保険金等を除く。）の金額（一定額を超える部分に限る。）が控除されるもの。
障害者控除	障害者の方に、27万円（重度の障害がある場合は40万円。以下同じ。）、扶養親族等が障害者である場合には、障害者の方1人につき27万円が控除されるもの。
寡婦(寡夫)控除	夫と死別した妻（寡婦）又は妻と死別した一定の夫（寡夫）の方等に原則として27万円の控除額が認められるもの。

※ 詳しくは、最寄りの税務署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警察以外の相談窓口はあるのですか

警察以外の官公庁や公的機関、その他各種の機関でも、次のような相談窓口の開設やカウンセリングなどの支援活動を行っています。

各種相談窓口

名 称	内 容
検察庁 被害者ホットライン	被害相談や事件に対する問い合わせができます。 ◇ 福井地方検察庁 電話：0776-28-8744 ホームページ http://www.kensatu.go.jp/kakuchou/fukui/fukui.shtml 全国の地方検察庁の窓口（検察庁ホームページ） http://www.kensatsu.go.jp/higaisha/index.htm#hotline
保護観察所	被害者等の方からの電話や来庁による相談や問い合わせに応じ、悩みや不安等を聞いたり、各種制度の説明や関係機関の紹介等を行っています。 ◇ 福井保護観察所 所在地 福井市春山1丁目1-54 福井春山合同庁舎10階 専用電話：0776-28-7125 全国の保護観察所の所在地等（犯罪被害者等施策ホームページ） http://www.moj.go.jp/HOGO/victim.html



2 세법 상의 구제 제도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부상을 입어 의료비를 지불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으신 분, 혹은 배우자와 사별한 분들에게는 소득세가 감액되는 ‘소득공제’가 인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명칭	내용
의료비 공제	지불한 의료비(그 의료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불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함)의 금액(일정액을 넘는 부분에 한함)이 공제되는 것.
장애인 공제	장애인에게 27만엔(중도의 장애가 있을 경우는 40만엔. 이하 동일), 부양친족 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1명에 대해 27만엔이 공제되는 것.
과부(홀아비) 공제	남편과 사별한 아내 또는 아내와 사별한 일정한 남편에게 원칙적으로 27만엔의 공제액이 인정되는 것.

※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십시오.

경찰 이외의 상담 창구는 있습니까?

경찰 이외의 관공청 및 공적 기관, 기타 각종 기관에서도 다음과 같은 상담창구의 개설 및 카운슬링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상담 창구

명칭	내용
검찰청 피해자 핫라인	피해상담이나 사건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후쿠이지방검찰청 전화 : 0 7 7 6 - 2 8 - 8 7 4 4 홈페이지 http://www.kensatu.go.jp/kakuchou/fukui/fukui.shtml 전국 지방검찰청의 창구 (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kensatsu.go.jp/higaisha/index.htm#hotline
보호관찰소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전화나 내청에 의한 상담 및 문의에 대응하여, 고민이나 불안 등을 듣고 각종 제도의 설명이나 관련 기관의 소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 후쿠이보호관찰소 소재지 후쿠이시하루야마1-1-54 후쿠이하루야마합동청사10층전용전화 : 0 7 7 6 - 2 8 - 7 1 2 5 전국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등 (범죄피해자 등 시책 홈페이지) http://www.moj.go.jp/HOGO/victim.html

日本語

名 称	内 容
法務省 人権擁護機関  携帯版ホームページ	人権擁護委員が被害者等の人権相談に応じ、人権侵害の疑いのある事案については人権侵犯事件として調査を行い、事案に応じた適切な措置を講じています。 ◇ 常設人権相談所 福井地方法務局人権擁護課 電話：０７７６－２２－５１４１ ◇ 全国の法務局・地方法務局の常設人権相談窓口 ホームページ http://www.moj.go.jp/JINKEN/jinken20.html ◇ インターネット人権相談受付窓口（SOS-e メール） ・パソコン http://www.moj.go.jp/JINKEN/jinken113.html ・携帯電話 http://www.jinken.go.jp/soudan/mobile/001.html
県及び市などの交通事故相談所	◇ 福井県の相談窓口 福井県庁１０階の県民安全課です。 電話：０７７６－２０－０７３０ E-mail : higaisoudan@pref.fukui.lg.jp
犯罪被害者等早期援助団体等	都道府県公安委員会が指定する犯罪被害者等早期援助団体や「全国被害者支援ネットワーク」に加盟している民間被害者支援団体が、警察等関係機関と連携を図りながら、犯罪被害等に関する電話・メール・面接相談や法廷、病院、警察等への付添い等による被害者等の援助などの活動を行っています。 連絡先：福井市宝永３丁目８－１ 公益社団法人福井被害者支援センター 電話：０１２０－７８３－８９２ ホームページ http://fvsc.jp
(財)交通事故紛争処理センター	交通事故による被害者救済のために、和解の斡旋や法律相談を嘱託弁護士が行っています。 窓口：本部は東京に、支部は札幌、仙台、名古屋、大阪、広島、高松及び福岡の各市にあります。 ホームページ http://www.jcstad.or.jp/
(財)日弁連交通事故相談センター	自動車事故における過失割合や保険金の支払についてのトラブルに関する法律相談、損害賠償の交渉に関する示談のあっ旋、脳損傷による高次脳機能障害に関する相談を無料で受け付けております。 窓口：本部は東京に、相談所は全国１５２か所に開設 ホームページ http://www.n-tacc.or.jp
損害保険会社の交通事故相談所	各損害保険会社の本店・支店・営業所内にあります。 窓口：

※ 詳しいことは関係する機関等にお問い合わせ下さい。

명칭	내용
법무성 인권옹호기관  휴대폰용 홈페이지	인권옹호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인권상담에 대응하여, 인권침해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조사를 하고, 사안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 상설인권 상담소 후쿠이 (지방) 법무국 인권옹호부(과) 전화 : 0 7 7 6 - 2 2 - 5 1 4 1 ◇ 전국의 법무국·지방 법무국의 상설 인권상담 창구 홈페이지 http://www.moj.go.jp/JINKEN/jinken20.html ◇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 (SOS-e 메일) · PC http://www.moj.go.jp/JINKEN/jinken113.html · 휴대전화 http://www.jinken.go.jp/soudan/mobile/001.html
현 및 시의 교통사고 상담소	◇ 후쿠이현의 상담 창구 후쿠이현청 10층의 현민안전과입니다. 전화 : 0 7 7 6 - 2 0 - 0 7 3 0 E-mail : higaisoudan@pref.fukui.lg.jp
범죄피해자 등 조기 원조단체 등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범죄피해자 등 조기원조단체나 '전국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에 가맹하고 있는 민간피해자지원단체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면서 범죄피해 등에 관한 전화·메일·면접 상담이나 법정, 병원, 경찰 등에 동반하는 등, 피해자 등의 원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후쿠이호우에이3-8-1 후쿠이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화 : 0 1 2 0 - 7 8 3 - 8 9 2 홈페이지 http://fvsc.jp
(재)교통사고 분쟁 처리 센터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화해의 알선이나 법률상담을 촉탁 변호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구: 본부는 도쿄에, 지부는 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다카마쓰 및 후쿠오카의 각시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jcstad.or.jp/
(재)일본 변호사 연 합회 교통사고 상담 센터	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 및 보험금 지불에 대한 트러블에 관한 법률상담, 손해배상의 협상에 관한 합의 알선, 뇌손상에 따른 고차뇌기능장애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창구: 본부는 도쿄에, 상담소는 전국 152개소에 개설 홈페이지 http://www.n-tacc.or.jp
손해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상담소	각 손해보험 회사의 본점·지점·영업소 내에 있습니다. 창구:

※ 자세한 것은 관계 기관 등에 문의하십시오.

カウンセリング

被害者等の中には、交通事故により強いショックを受け、不安でたまらなくなったり、気持ちをうまくコントロールできなくなったりする症状に悩まされる方がいます。

このような方を支援するために、電話や面接によるカウンセリングを行う
次のような機関がありますので参考にして下さい。



公益社団法人 福井被害者支援センター

月曜～土曜 10時～16時
TEL：0120-783-892



카운슬링

피해자 등 중에는 교통사고로 강한 쇼크를 받아 불안해서 참을 수 없게 되거나, 기분을 잘 컨트롤 할 수 없게 되는 증상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화나 면접에 의한 카운슬링을 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공익사단법인 후쿠이피해자 지원센터

화~토 10시~16시

전화 : 0120-783-892

